《증보문헌비고》(레고)에 반영된 삼국시기와 고려시기 상례풍습에 대한 간단한 리해

김 창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레의지국으로 불리워왔으며 고유한 미풍량속을 자랑하여왔습니다.》(《김일성전집》제4권 412폐지)

우리 인민이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 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에는 지난날의 력사와 문화전통, 생활풍습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민속풍습을 리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민족고전문헌인《증보문헌비고》는《삼국사기》,《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이루어놓은 귀중한 문헌유산가운데 하나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봉건왕조말기에 편 찬완성된 책으로서 지난 력사적기간의 자료 들을 종합체계화하여 묶어놓은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모두 16개 부문으로 되여있는데 《례고》는 이 책의 4번째 부문으로서 모두 36권이다.

여기에는 지난날 봉건사회에서 지켜오고 실시되던 각종 상례, 혼례, 관례, 연례 등 례 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 뉘여 기록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무엇보다먼저 삼국시기 상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 여있다.

지난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처리 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왔다.

상례풍습이란 지난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처리하며 죽은 사람을 추모하여 제 사를 지내는 례식풍습을 말한다.

상례풍습은 일정한 력사적시기의 사회제 도와 당대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 등 이 반영되여 전해오면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삼국시기에는 고대국가들의 풍습을 일정 하게 답습하였다.

고대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신성화하면서 죽은 사람의 령혼이 언제나 살아있다고 여기고 잘 대하는 풍습이 있었다.이 시기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도 령혼만은 살아 저승에 가서 다시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한데로부터 시신을 정중하게 대하였다.

삼국시기 사람들도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례를 례식에 맞게 진행하였다.

삼국시기 상례풍습을 보면 고구려를 중 심으로 백제, 신라의 풍습이 서로 일정한 공 통성과 함께 약간한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기 간 빈소에 안장하였다가 3년이 지난 뒤 장 례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증보문헌비고》권88 례고35 사장례에는 고구려에서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를 만들어놓고 3년이 지나서 좋은 날을 택하여 장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여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일정한 기간 빈소에 시신을 안치하였다가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는것 을 알수 있다.

고대시기에도 일정한 기간 빈소에 안치하였다가 매장하던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얼마동안 안치하였다가 매장하였는지 알수없다. 자료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3년을 안치하였다가 매장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시체를 빈소에 두었다가 장 례를 치르는 풍습과 함께 직접 장례를 치르 는 풍습이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 대무신왕 5년(22년)에 장수들이 괴이하게 죽었기때문에 임금이 해당 관리들에게 그들을 북명산의 양지바른 곳에 장사지내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구려 신대왕 15년(179년)에 국상 명림답부가 죽어 례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지내고 무덤을 지키는 20집을 내려주었다.》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에는 사람이 죽으면 빈소에 안치하였다가 장례를 치르는 풍습과 함께 관을 만들어 즉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풍습들은 후에도 많이 일반화되 여왔다.

백제에서의 상례풍습은 고구려의 상례풍습과 거의 류사하였다.

신라에서는 빈장기간이 매우 짧고 대체로 관을 만들어 매장한 다음 봉분을 만들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김유신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군악을 울리고 100여명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금산원(경주)에 장사 지냈다.》고 하였으며 《성덕왕 19년(720년)에 시중 김양이 죽어 임금이 애석해하면서 서발한이라는 벼슬을 추증하고 장례문과 제물들을 내려주어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88 례고35 사장례)

이러한 사실들은 후기신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빈장하지 않고 즉시 관에 넣어 장례를 지내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삼국시기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문제를 과학적으로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람이 죽어서도 저승에서 생활을 계속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호화로운 생활이 래세에서도 계속될것을 바라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들, 희귀한 장식품 등을함께 묻어주었다.

고구려사람들은 금, 은과 재물을 많이 써

서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돌을 쌓아 봉분을 크게 만들었으며 봉분앞에 소나무나 잣나무 를 심었다.

또한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입던 옷 과 좋아하던 물건, 수례, 말을 묘결에 놓아 두어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하였다.(《증보문 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봉분앞에 상록수를 심는것은 죽은 사람의 령혼이 영원불멸할것을 바라서였으며 또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있던 소지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것은 령혼의 위력이 후세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미칠것을 바라는 일종의 미신적인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고구려사람들은 무덤앞에 소나무나 잣나무와 같이 사철 푸르싱싱한 나무들을 심었으며 무덤도 돌로 쌓아 봉분을 만들거나 흙으로 크게 쌓아 만들었던것이다.

백제나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계급적 및 신분적차이에 따라 그에 어울리 게 장례를 치르었으며 죽은 사람이 쓰던 애 용품이나 희귀한 장식품 등을 같이 묻어주 는 풍습이 있었다.

삼국시기 상례에서 특이한것은 오시와 같 은 매장풍습이다.

오시란 사람이 죽어서 매장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죽은 사람과 영결하 는것을 말한다.

《례고》에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는 모두 소리내여 울고 장례행렬이 나갈 때에는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고인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여있다.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빈소에 안 장하였다가 좋은 날을 택하여 장례를 진행 하였는데 이때에 가무를 하고 음악을 연주 하면서 고인을 떠나보낸다고 하였다.(《증보 문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신라에서도 사람이 죽어 장례를 할 때 춤을 추고 북을 치며 피리를 불면서 고인을 떠나보낸다고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사람의 죽음과 가무의 동반은 령혼불멸을 믿고있던 당시로서는 흔히 있은 일이였다.

당시 사람들은 가무를 사람들을 즐겁게 할 뿐이니라 령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에 활력을 부어줄수 있는 위력한 수단으로 생각하였고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저승에 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여겼던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장례를 치를 때춤을 추고 군악을 울리고 북과 피리와 같은 악기들을 리용하여 장례를 요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삼국시기 상례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에 따라 상복을 입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시기에도 있었다.

삼국시기 사람들은 고대시기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에 따라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고대시기와 다른점은 상복을 입는 기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것이다. 고대시기에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얼마만한 기간을 경과하였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 기간에 상복을 입었지만 고구려에서는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3년동안, 형제일 때에는 3개월동안 입었다. 백제에서도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3년동안 흰 상복을 입었다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87 례고34 사상례)

이러한 사실은 삼국시기 사람이 죽으면 상 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기 상례풍습은 고구려를 중 심으로 백제나 신라의 풍습이 거의 같았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다음으로 고려시기 상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고려시기에도 사람이 죽으면 삼국시기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사회경제적 및 계 급적처지, 신분적지위에 따라 각이하게 처 리하였다.

고려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는 일을 물질, 정신적으로 도와주는것을 응당한 의리로, 도 덕으로 여기였다. 고려시기 상례풍습은 삼 국시기의 풍습을 따르면서도 무덤제도와 상 복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들은 당시의 조 건에 맞게 제도화하였다.

고려시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삼국시기처럼 빈장하였다가 장례를 치르는것이 아니라 인차 관을 만들고 관에 넣어 장례를 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는 고려 인종 11년 (1133년)에 세상을 내려오면서 풍속이 쇠퇴해지고 효성스럽고 우애롭지 못하여 부모가 죽어서도 해골을 절간 같은데 놓고는 여러해동안이나 장례를 치르지 않는 현상들이나타나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살피고 검속하도록 하였다는 자료가 있다.(《증보문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이것은 고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빈장 하지 않고 장례를 지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시기 봉건지배계급들속에서 사람이 죽어 무덤을 쓰는 경우 권력과 재력의 힘을 리용하여 제멋대로 무덤을 쓰는 페단을 없 애기 위하여 봉건국가는 무덤제도를 한정하 였다.

경종이 즉위한 해인 976년에 문무 모든 관리들의 무덤제도를 법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증보문헌비고》 권88 례고35 사장례)

고려시기 근로인민들의 무덤은 규모가 작고 간소하였지만 봉건지배계급들속에서는 권력과 재력으로 저마다 무덤을 크게 쓰는 페 단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로부터 봉건정부는 976년에 무덤제도 를 한정하여 법으로 정하였던것이다.

그에 의하면 1품관리는 사방 90보, 2품 관리는 80보, 무덤높이는 각각 1자 6치이 며, 3품은 70보에 무덤높이는 1자, 4품은 60 보, 6품관리는 50보, 6품이하관리는 모두 30 보로 하며 무덤높이는 8치를 넘지 못하게 하 였다. 무덤제도의 제정은 당시 봉건국가가 관료제도와 신분제도를 엄격히 확립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도 볼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고려에서 성종 4년

(985년)에 5복제도를 제정한 사실이 수록 되여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기에 와서 이전에 비하여 혈연관계를 더 중시하고 내세운것으로 하여 상례풍습도 종전보다 더욱 엄격해지고 다양해졌다.

5복제도는 죽은 사람과의 촌수가 가깝고 먼것을 따져서 상복을 입게 한 제도로서 가 족 및 친척의 범위에서 상복의 재질과 기간 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5복은 재질에 따라 참최복, 재최복, 대공 복, 소공복, 시마복으로 나누었다.

참최복은 굵은 베로 지어 단을 꾸미지 않은 상복으로서 3년동안 입는 옷이며 재최복은 조금 굵은 생베로 지은 상복으로서 3년 ~ 1년동안 입는 옷이고 대공복은 굵은 베로 지어 9달동안 입는 옷이며 소공은 5달동안 입는 상복이고 시마는 가는 베로 지어 3달동안 입는 상복이다.

5복은 또한 입는 방법에 따라 《정복》, 《의 복》, 《가복》, 《강복》, 《종복》으로 나눈다.

《정복》은 정식으로 입는것으로서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입는 상복이였고《의복》은 의 리적으로 입는 옷으로서 부부사이에 입는 상 복이다. 《가복》은 일반 상복보다 더 길게 입 는 옷을 말하는데 이것은 할아버지가 돌아 갔을 때 손자가 먼저 돌아간 아버지를 대신 하여 3년간(옹근 2년) 참최복을 입는것을 말 한다. 《강복》은 일반 상복보다 짧게 입는것 을 말하는데 자식들이 재가한 어머니가 죽 었을 때 입는 상복에 해당된다. 《종복》은 배필들이 입는 상복을 말한다. 며느리가 시부모가 돌아갔을 때 남편과 똑같이 참최복을 입는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려시기 특이한것은 외척의 상복이 중 시되여있는것이다.

고려시기 상례에서는 3년상제도가 기본 상례로 준수되여왔으나 한때 100일상제도 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지난날 사람이 죽으면 철저히 3년동안 상 복을 입고 상사기간을 마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공민왕 9년 (1360년)에 사방에서 전란이 일어나 3년상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공양왕때에 와서 다시 3년상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양왕시기에 3년상을 하도록 선포하고 3년상기간에 장가들고 시집가는것을 금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에서 3년상제도와 100 일상제도를 실시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증보문헌비고》에는 지난날 우리 민족이 준수하고 지켜오던 상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여있어 우리 인민의 상례풍 습을 리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온 민족풍습을 잘 알고 오늘의 시대적요 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성과 민족성을 깊이 간 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것이다.